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주택임대차의 이해관계인이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면서 이와 결합하여 확정일자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확정일자 정보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면서 이와 결합하여 확정일자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제공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단서를 신설함(안 제13조제1항제3호)

4.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면서 이와 결합하여 확정일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제공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1394